

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63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4. 11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도로점용료 분할 납부 시 적용 이자율을 현재 금융환경에 적합하게 개선 보완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도로점용료 분할 납부에 따른 적용 이자율 조정(안 제4조)
- 나. 도로점용료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 연기 시 적용 이자율 조정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도로법 제66조(점용료의 징수 등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- 다. 기타사항
 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 - (2) 성별·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 - (3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 - (4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 : 2014. 10. 8. ~ 10. 28.
 - 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 - (4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단서 중 “잔액에 대하여는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.”를 “남은 금액은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이자율(신규취급액 기준 COFIX)을 적용하여 징수한다.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그 잔액에 대하여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.”를 “남은 금액은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이자율(신규취급액 기준 COFIX)을 적용하여 징수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참고 1**관계법령(발췌)****□ 도로법 제66조 (점용료의 징수 등)**

-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 1.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
 2.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
 3.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(이하 "점용료"라 한다)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「부동산등기법」 제109조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「건축법」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.
-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,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(제23조제2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. 다만,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.